

제426회 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3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75)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0)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4)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6)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5)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33.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3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35.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36.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3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7)
  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6)
  3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1)
  4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0)
- 

### 상정된 안건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	3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
3.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4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4
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	4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	10
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	10
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	10
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	10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
1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75) .....	19
1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	19
1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	19
1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	19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21
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1)	21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21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21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21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21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21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21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21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21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0)	21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4)	21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6)	21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5)	21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32.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32
33.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33
3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33
35.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33
36.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33
3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7)	33
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6)	33
3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1)	33
4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0)	33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10시)36분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국방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출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을 얻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1조제3항과 제4항에서 방산업체가 보유한 방산물자를 폐기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 방위사업청장 승인 대상에 ‘방산물자를 폐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방산물자 폐기의 주체는 방산업체이므로 방위사업청장이 폐기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폐기 등 처분’이라는 용어를 ‘폐기 절차’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며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2 국회의원 등의 출입 방해 금지 규정과 안 제13조의2 군인 등의 출입 금지 규정의 전제인 국회의 장소적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안 제14조제5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은 안 제14조제4항의 계엄 시행 중 군인 등의 불법적인 국회 출입에 대한 벌칙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군인 등이 국회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미수행위를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미수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급식기본법안(대안)은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이 식재료 조달 업무를 국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권한·업무 위탁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위탁 대상에서 국가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이 함께 개정되어야 되는데 관련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심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김성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두희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김종철 병무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준태 위원님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오늘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양당 간사님께서 3분으로 합의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장관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반성적인 사고 아래 여러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국방위에서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합의된 안이 법사위로 상정된 겁니다.

○**박준태 위원**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 취지와 내용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법안 내용 보면 13조 제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박준태 위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엄 포고령에 의해서 현행법으로 체포된 경우라고 하면 이 해당 의원이 표결을 위해서 석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고개를 끄덕임)

○**박준태 위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현역 국회의원이 계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기타 본인의 어떤 비위행위나, 예를 들면 뇌물수수나 이런 것들로 체포돼 있는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표결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 석방이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그 부분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주 세부적으로 이 항목을 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이 자구가 포괄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태 위원** 그 상황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후자의 경우에 본인 개인 비위로 체포돼 있는 의원이 계엄해제를 위해서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국방위에서는 결정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국방위에서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굳이 구분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계엄해제를 위해서 의원들의 표결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개인 비위라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시킨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표결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 비위가 있는 의원들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특혜를 누리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그것은 법체계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만 계엄법이 국가의 형사절차를 제약하거나 별도로 통제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차관님, 방금 박준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법으로 담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의 하부 규정으로 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제가 다 알지를 못해요.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 때, 국회에 바로 통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통고했었나요? 통보했었나요? 저희가 TV를 통해 알았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그런 절차적 하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통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에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시에 준하거나 그리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 한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이겨내고 대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국회에 통보를 했지만 국회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통보하지 않은 문제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낸 안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한 국가권력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이다, 그래서 국회에 통보만이 아니라, 국회에 해제권도 있지만 승인을 받아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논의된 것은 어떤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개헌의 소요가 따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없이 현행 법률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개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개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번에 문제는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국회의원들을 다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해서 해제가 안 되었더라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 평양에 드론기가 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불체포특권이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고 그리고 ‘경찰이나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넣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 비상계엄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국회에 진입하거나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그렇습니다. 통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수범까지도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의료법이 함께 개정이 돼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데 4항을 보면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법안이 통과되고 6개월 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안이 확실하게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했다 함께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오늘 그냥 분리해서 통과시킬 것인지는 위원장님께서 적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김기표 위원 계엄법 제13조 2항, 아까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논의될 때, 그 조문을 보면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안전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걸로 봐서 이게 현행범인 사람들을 석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표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고. 일전에 실제로 계엄이 발생하기 전에 계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국무총리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막상 계엄이 되면 현행범인 경우는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서 만약에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라든지, 꼭 계엄 포고령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든지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엄하기 직전에 다른 사유로, 예를 들어서 ‘당신 뇌물 받았지?’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간다든지 이런 유의 술수를 써서 계엄해제를 방해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꼼수랄까요, 술수랄까요, 이런 것을 사실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상황을 다 법률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표결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안에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불체포특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계엄법 14조(별칙) 조항을 보면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김용민 위원 계엄군이나 경찰들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거의 들어맞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성립되면 내란죄도 같이 성립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란죄에서 일반 부화수행한 경우에, 87조 3호지요. 이게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형량이 똑같다 이겁니다, 지적하는 부분이.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경우는 대놓고 콕 찍어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란죄의 부화수행과 형량이 동일한 것이라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논의해서 추후에 개정을 하시든가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4조 4항이지요, 경내에 출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이게 내란죄 부화수행으로 만약에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처벌 조항이 높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란죄와의 관계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고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대로는 가야겠지요, 저희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감사합니다.

○김기표 위원 1분만,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한 30초만 주시면 돼요.

○위원장 이춘석 짧게 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번 계엄 정국에서 저희가 목도했던 것은 법이 규정이 돼 있는데도 법대로 안 한 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버리는 것. 그래서 법전을, 그러면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 계속 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이 거의 산더미처럼 쌓이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무도하게 저지르는 계엄을 우리가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체포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출석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규정하는 거는 무도한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이 계엄법안을 논의할 때 참여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현행법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건 계엄해제에 동의한 숫자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규정을 둬야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오늘 법안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이 수정돼야 된다, 보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법안 개정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결국은 법을 안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될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번 역사적인 교훈은.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하나만 얘기……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계엄법에 대해서는 지금 김기표 위원이 법을 안 지키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지난번 윤석열도 법을 안 지켰어요. 국회에 바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성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기다렸어요. 발표가 되니까 통보로 간주해서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걸 하고도, 국회에서 의결해서 바로 정부에 즉각 통보를 하면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 의결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법적 요건이 나타나는데 그때도 안 해 가지고 6시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어떻게 본회의장을 나갈 수 있느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자다가 사진 찍혀 가지고 망신당했어요.

이게 뭐냐? 정부가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계엄법 통과되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지킬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명심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므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차관님, 석종건 청장님, 김종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방역관리계획 수립 기준일이 등록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등록자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므로 시행일 기준 유예기간을 두는 부칙을 신설하고, 계획

수립 범위는 위탁사육에 한정된 반면 출입조사 대상은 자기 소유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문 체계에 맞추어 계획 수립 범위에 ‘자기 소유·운영 시설’을 추가하며…… 마지막 문단입니다. 출입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 조항이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적용 조항을 명시하고 승인 미이행보다 미승인의 과태료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한우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협의회 운영, 장려금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유전자원 보호, 한우의 날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제상의 자유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규제 대상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설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유전자원 국외반출 조항은 승인 주체와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 승인 기준 명시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이 기존 법령 및 제도의 중복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9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김성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석준 위원 유임이 결정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장관 인사를 잘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유임되신 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석준 위원 성실히 일하시는 거, 지난번 초겨울에 습설·폭설이 내렸을 때 이천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될 때 현장 와서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어루만지고 대안을 제시해 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정신, 노력 계속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양곡관리법, 이게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고 문제가 많았던 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요즘 전국적으로 농지가 부족합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따져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농지의 생산성을 좀 높이는 또……

○**송석준 위원** 그게 지역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송석준 위원** 예를 들면 지방의 전형적인 농업 도시의 경우에는 농지 외에는 달리 쓸 수도 없고 농지가 어쩌면 생업의 원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지역은, 농업에 의존하는 동네는 정부가 양곡관리법의 정신을 살려서 최대한 곡물을 또는 그런 농산물을 어느 정도는 책임지고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로 지원하는 방안은 필요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수도권 또는 지방의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 또 대도시 주변지역 농지의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농지 가격도 비싸고 또 도시에 끼어 있는 농지가 많단 말이에요. 보전지역이지만,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쇠퇴하고 충돌이 오는, 도시 기능과 충돌되는 이런 지역은 과감하게 이제는…… 국토계획 변경 요청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농림부가 협의할 때 과감하게 농지를 도시적 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도시의 기능도 활성화하고 또 농지 소유자들, 그분들이 도시적 용지로 과감하게 써서 일자리도 늘리고 우리 경제 활성화, 특히 지방경제 또는 도농복합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을 주겠지요.

그런 현장의 얘기 잘 들었고 건의 많이 듣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농지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틀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엄정히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천시의 실태도. 더 이상 농지로서의 기능이 쇠퇴했다거나 충돌이 오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지역은 과감하게 도시적 용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한번 실태조사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식량 안보 등을 고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석준 위원** 식량 안보는 여유 있는 농지, 지방에 많은 농지로밖에 쓸 수 없는 땅 그런 곳에서 확보해도 충분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 상임위에서 또 농지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어서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타 용도로 과감한 농지 용도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

○위원장 이춘석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조배숙 위원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양봉이 폐사가 돼 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양봉이 자꾸 폐사하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게 뭐랄까요, 병도 좀 있고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여러 원인이 있지요. 기후 이상도 있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조배숙 위원 기후 이상도 있고 또 응애라는 별레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응애.

○조배숙 위원 그런데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탕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설탕꿀.

○조배숙 위원 설탕꿀이 있는데, 설탕꿀을 만들려면 꿀벌한테 꽃이 아니라, 화분이 아니라 설탕물을 먹이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폐사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설탕꿀을 하는 사람이 양봉이 폐사되니까 지원금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설탕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설탕꿀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이게 천연꿀이라고 해서 사람들 불신이 너무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이름을 사양꿀이라고 바꾼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원래 사양꿀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탕꿀로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아예 바꾸자라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지금 현재 정리된 것은 사양꿀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 그 표기 자체를 뒷부분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오히려 천연꿀을 강조해서 부각시키는 방법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 양봉업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사양꿀이라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사양이라는 꽃이 있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 줘야 양봉업계 질서가 혼탁스럽지 않고 제대로 되고 양봉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식약처하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품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 생산자단체 쪽에서는 오히려 작년에 설탕꿀이라는 것으로 표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식약처하고 소비자단체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소비자가 사양꿀이라는 명칭에 익숙해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천연꿀이라고 표시를 해서 천연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어

떻겠냐, 현재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탕꿀 표기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업계의 요구나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 잘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박지원 위원** 축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송미령 장관이 유임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제가 최초로 ‘아주 잘했다’,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 계시면서도 농안법, 농업 4법에 대해서 농망법이다라고 반대를 했지만 농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누구보다도 높더라’……

그리고 특히 해남·완도·진도에 작년도 벼멸구 피해가 있을 때 최초로 농업재해를 인정해서 10억을 보상해 주고. 해남은 전국 배추의 약 30%, 3500억을 공급하고 있는 곳인데 이 배추 문제를 수입을 억제하면서 도와줘 가지고 해남 배추가 작년에 완판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고, 저는 특히 해남 배추 농민들이 ‘배추 대통령이다’라고 하더라……

또 금년에도 봄배추 꽂대가 나왔는데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해로 인정해서 5억 4000만 원을 정부에서 보상하겠다, 양파 보관비도 1억 5000만 원 지원하겠다, 아주 잘하더라……

잘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했던 농업 4법에 대해서 당시에는 농업망법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러한 것을 개과천선해서 농업홍법이다 하고, 물론 조건부 찬성이 있지만 찬성하는 것 아니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지난주에 또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오히려 남는 쌀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정부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남는 쌀을 아예 안 만드는 방식으로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농망이 아니라 희망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발표도 하였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송미령 장관 유임을 지지하고 칭찬했다가, 해남농민회 이무진 회장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못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해남 농민들은, 해남군민들은 박지원이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민단체들, 특히 해남농민회 같은 곳에서는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화를 해서 그려한 것을 잘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지금 수산업은 대개 보험이 잘돼 있어요. 그러나 농업은 보험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고 농사 짓는 농민들이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금년 같은 때 보면 이미 마늘 농사를 수확해 버렸기 때문에 보전을 못 받고 있는데 아주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관 하시면서, 잘하시겠지만 농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농산품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자꾸 유도를 해서 농민의 피해를,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농민이 안 되게 과학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게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장동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장동혁 위원 8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양봉산업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기관들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한 건데. 그동안 계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지금 양봉산업이 갖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동안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은 농업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거의 안 돼 왔습니다. 지원도 안 돼 왔지만, 지금 양봉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별들이 왜 갑자기 폐사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안 되어 있고 지원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안 되다가 오늘 법으로 인해서 그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어떤 기관들을 설치하고 어떤 지원들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가가 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있을 수 있

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설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벌들이 지금 폐사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 그리고 양봉하시는 분들이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소나무재선충병 이런 것들 때문에 항공방제를 실시하면 그 약 때문에 벌들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뇌에 이상이 생겨서 벌통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폐사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 양봉농가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사실 국가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연관성이 입증될 때 외에는 보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업계에서는 그게 엄청난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항공방제를 할 때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양봉업계에 피해가 안 갈지 그런 고민들을 함께해주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 보상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 관련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방제할 때 농가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포함해서 질병관리 능력 향상하는 것과 함께 만약에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회생자금 지원이라든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양봉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예.

○**위원장 이춘석**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장관,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고맙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양곡법 문제는 이게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식량주권이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 농민들 삶의 질 문제, 지역 소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만 지방에 아직도 제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장관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의 철학이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농림부 직원분들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양곡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몇 달 전에는 이게 농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쌀 수급 문제, 과공급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조정할 수 있다는 이 정부의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것 솔직히 저는 말장난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장난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농민들이 지금 장관님만 보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민주당이 이렇게 유임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농민단체들이 장관님 물러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희망이 보이는 법을 내놓으셨는데 왜 장관님 유임을 반대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모든 농민단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쌀이 과잉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인데 사

전에 수급 조절 없이 생산을 계속 권장하는 방식의 법률이 되면 남는 쌀은 창고에 쌓아둬야 되고 쌀이 많아지면 쌀값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요 지난 정부 때 거부권 행사 건의하시고 이것 포퓰리즘이다, 농망법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 당에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양곡법을 거부해야 된다가 아니라 농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삶을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우리 당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이었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왜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이건 농망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갑자기 몇 달 안에 그런 철학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철학이 바뀐 게 아니고요, 위원님.

○**신동욱 위원** 이게 한 장관의 유임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게 위원님……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혹시 유임을 제안받으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민주당 현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강도 높게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묻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난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다라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두텁게 농가를 사전,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여건이 송 장관님의 머릿속에서 몇 달 안에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지 제가 답답하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임되셨으면 유임되신 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물론입니다, 위원님.

○**신동욱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그리고 제10항 및 제1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의 수급 조절에 대해서 농림식품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급을 조절하는데 대체작물의 개발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급 조절을 하셔야지 무조건 양을 줄이겠다고 생각해서 질도 좋고 생산량도 많이 나오는 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생산을 중단시켜라 이런 조치들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석** 아니, 특정 품목·항목에 대해서 생산을 그만해라, 수매도 않고 뛰도 안겠다 하는 얘기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딱 30초만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계실 때……

잠깐만요. 지난번에 농망법이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양곡관리법은 대체작물로 미리 다 배치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쌀 생산량을 조절해라라고 하는 게 원래 양곡관리법의 취지이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위원장 이춘석** 그냥 마쳐 주십시오. 제가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다시 지적하면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 우리당에서 냈던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쌀값 안정화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대체작물로 미리 전부 다 조정하고 그리고 쌀 수급량을 조절해라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이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부권을 날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예.

○**박지원 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독재하면 안 되지.

○**위원장 이춘석** 아니, 원칙을 지켜 가야 서로 원만하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깨져 나가면…… 제가 쭉 법사위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칙을 지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요청은 드렸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075)

1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1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11시19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산자중기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 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보급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하게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3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4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체계·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이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현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1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11시21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문체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

시설 등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 체결 후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학교의 장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장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포함한 학교시설 이용의 요건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과 체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과 관리주체 간 이용계약 체결 등으로 학교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학교장의 면책은 이용계약 체결 시에만 가능하여 사실상 이용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와의 이용계약 부분을 삭제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2차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차관님, 저는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 특히 농촌지역 이런 데는 사실 개방해도 학교 운동장밖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학교에 수영장 시설을 더 갖추거나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것을 체육시설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런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는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학교 시설 외에는 별다른 체육시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더 확대하고 설치해 나가면 그것이 결국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에서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저는 이것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 지역 지역마다 학교에 수영장이라도 하나 계속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학생들의 체육시설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대부분의 농촌 지역들에는 그 지역에 수영장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꼭 수영장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빨리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역 학교들의 체육시설을 확대해 가는 그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1)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0)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4)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6)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5)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25분)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7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범·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되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격 없는 자가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민·강훈식·오기형·차규근·박상혁·김남근·박균택·이강일·이소영·윤준병·이정문·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총 12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에 관하여는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며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용민 소위원장님 그리고 장동혁 간사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원만하게 합의 처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또 합의하기로 한 2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셨는데, 처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에 대해서 많은 반성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많이 상정이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지금, 검찰은 자신들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 분명한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연어·술 파티, 진술세미나 등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왜곡이 있었고 또 지난 6월 24일 배상윤 부회장이 SBS 인터뷰에서 당시에 김성태와 자신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실상 공작에 가까운 이런 기소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검찰의 증거 조작에 관여됐던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내부에 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일부 사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잡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내부에 감찰을 하시고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서 과연 공작과 증거 조

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다음 법사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 룸살롱 의혹이 법사위에서도 제기됐고 많은 언론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라고 표명을 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윤감실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조속히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전현희 위원 그리고 다시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이 법사위 자리에서 별문제가 없고 잘 마무리됐다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청탁금지법 9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물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디올백 수수에 관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고 반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발족되어서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저희도 지켜보고.....

○전현희 위원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당시 최재영 목사의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는데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대체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처장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된 형사재판이 5건인데요 그중에 4건이 중단됐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우선 대법원이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중

단됐고요. 그 이유는 헌법 84조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게 타당한 이유인지…… 왜냐하면 분명히 소추라고 하는 것은, 헌법 84조 보면 아시잖아요? 소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소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받은 것은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또 지난 7월 1일 날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연기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대북송금 재판 하나뿐이에요. 그 재판도 연기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시겠지만 개별 재판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저는 이런 재판 연기 결정이 사법부가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권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6월 30일 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있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저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상당히 기대도 했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거기서 안건이 뭡니까? 지금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특정 판결에 대한 특검 추진하겠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사법 신뢰 그리고 재판 독립 이런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하나도 결론 못 내렸어요. 안건이 다 부결됐는데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명백하게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 절차는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찬성이 16명 반대가 67명, 압도적인 차로 촉구하는 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기의 권리인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법관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될 이런 권리조차도 외면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법부 스스로가 독립을 지킬 의지조차 없는 겁니다. 과거에 법원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사법부 수장도 침묵하고 법관대표회의마저도 아무런 대응이 없고 그러면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법원을 독립된 제3의 권력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럴수록 정부와 여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혼들 것이고요. 견제의 기능을 잃은 사법부는 결국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법부 독립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점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모든 법관들이 지금 이 시간에

도 그와 같은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재판에 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법관들의 독립적인, 자치적인 조직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그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는데 그 시점에서 어떤 의견을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사법부 독립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데 이렇게 조용합니까? 실망스럽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원행정처 처장님,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돈 받은 게 1건이라도 나왔습니까? 꽝상도, 박영수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는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가 산 것 이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다하다 어떻게 대장동의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가 사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쌍방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울 건이, 이번에 배상윤이라고 하는 KH 회장이 고백한 게 나오고 또 인터뷰한 게, 녹취를 제가 지난번에 틀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나왔어요, 가장 최측근.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쌍방울도 변호사 대납 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변호사비 대납 건은 하나도 없고, 쌍방울에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들을 가서 보니까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만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끝내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이것 다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동안 검사를 해 오면서 도대체 얼마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낱낱이 온 세상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오늘 질의를 통해서 알려 드리면서……

(영상자료를 보면)

오늘 나온 내용은 그것입니다. 김건희가 조국 수사를 했던 김상민에게 공천을 주라고 김영선에게 전화를 했고, 그 전화하는 과정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름이 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JTBC 보도에 명태균 씨가 그 이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들과 관련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귀연……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구속취소했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심우정은 공수처에 법적 조치되어 있고 이번 내란에 연루되어 있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질질질질 끌고 있고 구속취소는 전례 없었던 최초의 일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독립성 운운하지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랬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해당 재판부에서도 역시 이 순간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국민을 위한 소명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그렇게 믿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믿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믿는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어제 모처럼 여야가 굉장히 예민한 상법안을 소위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굉장히 쟁점 법안을 여야가 진중한 토의와 고민 끝에 모처럼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경제계 우려를 최대한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하지만 어제 통과된 안 중에 이사 충실험의무 이게 지금 다른, 예를 들면 배임죄 이런 관련된 부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사의 충실험의무만 확대될 경우에는 결국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남발되거나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활동에 상당한 부담과 여러 가지 압박이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가 큽니다.

듣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 물론 강력히 주장하는 여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추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나중에 다뤄 봅시다라고까지 하시면서…… 이 조항 시행이 바로 즉시 시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시행 시기를 다른 관련 법률의 보완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6개월 내지 1년 조금 유예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임죄를 좀 더 일부 완화한다든가 또는 신사업 투자 등 기업들의 정상적이고 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이사 충실험의무 때문에 소송이 남발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권 보호장치도 좀 마련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일단 저희 법무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합병 등에 있어서 이사의 행동규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 등 다양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반영되어서 어제 충실험의무 등 조항이 수정·보완돼서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소위는 통과됐지만 최종 시행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법률적 또는 관련 하위 규정 보완 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태를 좀 정확히 진단해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행정처장님, 아까 전현희 위원도 여쭤봤지만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윤리감사관실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조사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직 보고받지 못했으니까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사위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5월 14일입니다. 두 달이 됐습니다.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대법원에 감찰 진행 상황을 물어봤더니 여전히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 비공개 정보다’ 이런 이유로 계속 얘기를 안 하는데, 처장님께서도 5월 달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엄청 궁금해하고 저희 방에도 어떻게 되는 거냐 자꾸 물어봅니다.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윤감실이 저희 행정처와는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윤 위원 그래도 언제쯤 발표하겠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은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늘 회의 마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진 경과를……

○이성윤 위원 결과까지 꼭 언제 하겠다는, 결과 언제 발표하겠다 또는 법사위에 언제 보고하겠다 이 정도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무부차관, 지난번에 화요일 날 나오셔 가지고 질문에 답을 많이 했는데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이성윤 위원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어떤 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아시다시피 명품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조사방식이나 그 후에 밝혀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발견 등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

을 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난번 답변은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사건에 제가 국한해서 설명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위원님의 취지를,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거는 헌법재판소조차 검사가 증거 수집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을 다했는지 의심이 든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탄핵재판에서.

이 중앙지검 수사팀 사표를 덜컥 받아 줬는데 아직 공수처에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이분들 사표 절대 수리해 주면 안 됩니다. 그 부실 수사에 대해서, 특검 수사 대상이니까 반드시 결과 나올 때까지 사표 수리하지 마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준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회의원은 계급도 군번도 없다, 국회의원 발언을 누가 막느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자주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에 대한 안건 토론을 하거나 대체토론을 하거나 의결을 할 때는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법사위에 현안이 많다 보니까 다른 취지의 질의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방침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질의도 준비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히 대체토론에 포함되는지 현안에 포함되는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활용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유로하시고 또 계속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특히 현안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필요하다 하면 별도로 현안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양간사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동혁 위원** 아니요, 저는 대체.....

○**위원장 이춘석** 먼저 신청하셔서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제가 법률가 출신도 아니고 법사위에 막 와 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서 천대엽 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감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구연 판사는 왜 감찰을 합니까,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의 행동강령, 법관으로서.....

○**신동욱 위원** 어떤 부분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듣기로는, 저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윤감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그때 외부인과 사이에 술집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그런 부분이……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보도가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 부분도 역시 감찰 대상인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신동욱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언론 보도를 가지고, 술집 부분은 제가 봐도 그렇게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거기서 술을 어떻게 먹었다는 것도 어떤 일방적인 매체의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법원이 감찰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 감찰을 왜 서두르지 않느냐라고 계속 압박할 때 법원이 그거 따라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 주신 것처럼 지귀연 부장의 재판상 여러 가지 결정이나 또 앞으로 이루어질 판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신동욱 위원** 체포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우리가 열심히 감찰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법무부차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법사위가 이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 하면 아까 권성동 의원, 동료 의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당에서 입장문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 KH그룹이라는 테가 소위 범죄로 도피해 있던 배상운 씨가 운영하는 그룹이에요. 여기의 관계자라는 조 모 씨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안 좋은 진술을 해 주면 40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보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던 게 다라는데 이걸 민주당의 위원님이 ‘권성동 대표가 40억 원을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아무리 국회 상임위원장이고 이 자리에 그분이 없습니까만 그 말만 들으면 무슨 권성동 의원이 대단한 범죄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

○**김용민 위원** 권성동 의원이 와서 하세요, 그 얘기는.

○**신동욱 위원** 조용히 하세요.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싶으면 에이부터 제트까지 정확하게, 적어도 국회의원에 대한, 상대 당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녹취에서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가면 이 피해는 권성동 의원만 입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합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권성동 의원 입장문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40억 원을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하면…… 법무부에서도 자세히 조사해 보십시오, 조 모 씨를 불러다가 수사하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기간이 일심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기표 위원 그 기간을 둔 이유가 뭘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피고인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범위 내로 구속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 취지가 6개월 지나면 구속된 피고인은 무조건 풀어 줘야 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건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다면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외국에는 구속기간 제한이 없는 여러 나라도 많다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 않지요. 저는 법원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늘려 달라 이거는 접근법이 잘못됐어요. 재판을 어차피 한 달에 한두 번 하면서, 6개월 후에 분명히 풀어 줄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기본적으로 일심에 사실심 법관이 충원이 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실하고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지금 내란범죄를 재판하는 재판부에 배당이 얼마나 됐는지 실제로 배당도 감안을 해 주는 상황에서 그 재판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6개월 내에 도저히 끝낼 수 없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풀려나려다가 특검이 와서 추가로 기소하면서 다시 6개월 늘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쪼개서 기소하는 것이 편법이라고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런 재판부라면 기소를 좀 쪼개서 해서라도 6개월씩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

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내란수괴도 구속기간이 시간이 되니 날짜가 되니 해 가면서 풀어 주고 그다음에 거기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재판은 그냥 하세월로 하면서 6개월 있다 풀어 주고.

이게 재판부가, 사법부가 지금 내란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죄를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재판부가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는 법원행정처나 이런 데서 관여를 해서 재판은 적어도 6개월 내에, 구속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든지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법관들이 주어진 기간 내에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김기표 위원** 아무리 내란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해 놔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에 대해서 기소를 해 놔도 6개월 있다가 다시 풀어 주고 다시 풀어 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는 구속기간을 늘려서 다른 모든 범죄 피고인의 인권까지 침해될 우려를 일으키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희들 국회와 상의해서 그런 부분 여건 정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처장님과 직무대행 두 분 모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경제계의 우려도 있고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충실험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법정의무가 생긴 것인데 재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 모두 다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주의 이익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기업으로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주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기업의 경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법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들도 잘 담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쪽으로 법원도 판결을 하되 또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이 법 조항이 운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에서도 이 법 조항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일부 주주들에 의해서 계속 고소·고발되는 것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사만이 아니라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특히 이사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지나서 한번 법무부에서 이 법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우리 법사위에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유념해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항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저희들로서도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런 점들을 잘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반드시 6개월 좀 지나서는 특히 이사 충실의무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30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2.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59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 8개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하여 7월 9일 오후 2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고유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후 검토보고까지만 듣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는 7월 9일 공청회 직후에 실시하겠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33.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3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35.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36.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3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7)

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6)

3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1)

4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0)

(12시02분)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은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석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은정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33항부터 40항까지 대체토론이 없다는 점을 미리 공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체토론 아까 못 한 부분을 시간을 3분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검토보고 끝나고 그때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33항~제36항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4건의 법률안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는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법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 법안입니다.

이는 현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소청과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여 담당시키고,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며—2쪽입니다—한편 각 수사기관 간 수사 과정에서의 원활한 업무 협력과 조정을 도모하며 민주적 통제를 통해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주권주의 실현 등을 위하여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정안은 검찰청의 기능과 조직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여 검찰에게 집중된 형사사법 권한과 그 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관 간 권한 분산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1948년 제헌 이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중대한 변화이므로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권력 간 견제·균형 등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과 완전 분리에 따른 수사자원 운용의 비효율과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하는 한편 수사권의 분리·이관이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 및 범죄 대응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세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수사권 배제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신청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제3항과의 관계, 공소 기능의 공소청 이관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한 헌법 제89조제16호와 부합하는지 여부도 세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함에 따라 형사사법 제도 전반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조직 체계에도 큰 변동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형사소송법 및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분리된 수사기관 간 조정·협력을 유도하고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그리고 기존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원회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봅니다만 형사사법 제도는 공정한 운영과 더불어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는 점 또한 감안을 할 때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 관련 조정 등을 하기에 앞서 수사기관 스스로 또는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설치 찬반론 각각의 논거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는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과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위탁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센터의 법적 지위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의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행업무를 고려할 때 현재 소년원장 산하에 설치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소년원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 별도의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고—다음 페이지입니다—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전체를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탁의 대상을 그 업무의 일부로 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과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하여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상담·교육 명령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보조수단인 임시조치보다는 재판 전 보호관찰에 가까운 조치로 보이므로 소년의 권리 제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담·교육의 내용 등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치료감호 가종료자 등에 대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가석방된 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가종료 등 예정자의 범죄 내용,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0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40항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0항 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전자공증제도를 확대하여 전자공정증서까지 도입하려는 것으로 전자공정증서 작성 시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작성에 대한 절차 등 전자공정증서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공증제도 이용의 편의성 증대, 접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전자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촉탁인의 확인과 그 의사의 진실성 확인, 해킹, 시스템의 오류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대체토론은 7월 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아까 대체토론 시간에 대체토론하셨고 박은정 위원님은 이번에 대체토론이 허용되는지 알고 사실은 아까 대체토론을 안 했다고 하니까 박은정 위원님만 허용하고 이 부분과 관련한 대체토론은 다음 공청회를 마치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만 끝나고 좀……

○위원장 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진수 대행님, 오늘 상정된 법안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검찰청 폐지법이 있거든요.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차관이신데 검찰청 폐지법안에 찬성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는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하려면 검찰청을 폐지해야 되거든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검찰청 폐지법안에 찬성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부임하시면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

○박은정 위원 아니, 차관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대행이시잖아요. 법무부 입장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폐지법안에 찬성하시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장관님께서 취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법무부차관으로서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난 화요일 처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 봤는데요, 차관으로 임명되셔서 본인도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관여하신 대검의 대통령 석방,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항고포기 대검 부장회의 요, 전원이 찬성했거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날 부장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저 사람들 맞습니까?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 .....

○박은정 위원 저 중에서 한 명은 참석 안 했다는데 누군지 아세요?

차관은 뉴스데스크에서는 찬성했다고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내부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 박은정 위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석방 당일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저때 노만석 지금 대검 차장은 참석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대검 차장 됐던 데 검찰의 이인자, 노만석 차장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때 참석했지 못했기 때문에.....

### ○박은정 위원 몰라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한 명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노만석 대검 차장, 이번의 신임 차장은 참석한 것 같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러면 저기 앉아 계신 법원행정처장님이 법사위 나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하고 나서 지금이라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항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도 대검은 두 번째 항고 포기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때 보시면 일일이 심우정 전 총장이 간부들한테 개별 의사 물어 가지고 결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찬성하셨겠네요. 그러면? 내란수괴 풀어 주라고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내부 회의에서 견의드리거나 의견 개진을 했던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은정 위원** 내란수괴를 풀어 줬냐 안 풀어 줬냐, 거기 찬성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얘기예요. 본인이 내란수괴 풀어 주는 데 가담을 했는지, 수사 대상인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찬성이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현 시점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석방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즉시항고 제기 또는 항고 제기를 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의 제 의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풀어 주는 데……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왜 본인의 직을 걸고 반대 안 했습니까? 본인이 거기 가담하신 거예요. 심우정의 창모였잖아요. 이제 와서 딴소리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참모로서……

○**박은정 위원**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본인이 명품백 무혐의 수사 지휘한 것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명품백 사건에 있어서 총장님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도 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무혐의 수사 지휘했잖아요. 저는 국민을 대리해서 본인의 과오, 친윤 검사로서 본인이 잘못했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사과를 하시라고요. 사과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 주는 데 가담하고……

○**곽규택 위원** 지금 질의시간 끝났잖아요. 고함은 나가서 치세요, 좀.

○**박은정 위원** 명품백 무혐의를 수사 지휘한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시라고요!

○**곽규택 위원** 뭐 이리 무질서해?

○**박은정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춘석** 박은정 위원님 질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쳐 주시고……

○**박은정 위원** 왜 사과 안 합니까? 사과를 하시라고요!

.....

○**위원장 이춘석**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으니까 송석준 위원님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께서 아까 본인과 관련해서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까지만 허용하고 오늘 더 이상은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부터 말씀하세요.

○**송석준 위원** 대체토론을 대체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위원장 이춘석** 대체토론을 대체하는 의사진행발언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님만 바뀌었더니 법사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말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오늘 보면 느껴집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께서 9개월 만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의 이유인즉슨 오늘 상정되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검찰 제도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제헌 이래, 정부 수립 이래 가장 기본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자리잡아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 현행 헌법 시스템 내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기본 제도인데 이것에 대한 개혁을 오늘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추석 전에는 열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

○**위원장 이춘석**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해 주시고, 대체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제한을 두지도 않겠지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대체토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7월 9일 날 공청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중요한, 소위 말해서 헌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형사사법 시스템인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나온 대로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거다 그리고 내일모레 공청회를 열 것이다…… 조기에 물러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우려한 대로 이미 시한을 정해 놓고, 결론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법사위에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적 그다음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잘 다듬어진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어떤 사감에 의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뜯어고치겠다, 그것도 서두르겠다…… 시한을 정해 놓고 결론도 정해 놓은 것같이 가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일 날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제발 좀 신중하게 검찰개혁을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송석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여기서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제1소위에 회부할 겁니다. 그래서 1소위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시고, 검찰청의 분리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논의들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사실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발언하고 잠시 나갔더니 야당에서 저와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공격을 하길래 제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게 한 건이라도 나왔습니까,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위원장 이춘석** 아니아니, 질의는 안 됩니다. 발언으로 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나왔고, 그런데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가 샀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광상도 50억이 나왔고,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선배 특검 박영수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쌍방울 건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KH 회장인 배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다 사실이 아니었다. 이재명 관련해서 어떠한 진술을 하면 봐주겠다고 하는 시그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틀어 볼까요? 아니라고요? 제가 권성동 의원 녹취를 지난번에 틀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틀었는데 한번 다시 틀겠습니다.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위원장 이춘석** 아니아니, 틀지 마십시오. 이 부분 틀지 마시고 발언만 하십시오.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의 내용으로 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아니, 신상발언이 저 확인을 해야지 나오는 건데……

없다면서요, 얘기가. 돈 얘기, 액수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권성동 의원 입으로

직접 나오잖아요. 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40억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40억은 벌써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도에?

그러면 저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이 이에 대해서 지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 사건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내란에 동조했는지 낱낱이 다 특검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는 절대로 돈 이야기 그리고 부정한 이야기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별백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당시 이재명 대표를 난자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신동욱 위원 나오셨는데 그 녹취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신동욱 위원** 왜 저한테 질문하세요?

○**서영교 위원**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온 세상에 녹취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녹취가 온 세상에 다 나왔다고, 권성동 의원이 그 KH 배상윤 회장 밑에 있는 조 회장과…… 조 부회장입니까? 직접 통화하는 녹취 온 세상에 다 나왔다고 제가 여기서 공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이춘석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이두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최남호  
병무청  
청장 김종철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보고사항】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1호	2025. 7. 1.	법무부